제417회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06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1조) ····· 2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1.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1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①‘「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1]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②‘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④‘제7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	6. ----------위원, 전문위원의----------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현 행	개 정 안
되지 아니한 사람	-----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 설>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8. 제7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7호에----------사람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

나. 검토 의견

○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 제11조[2]는 제1항 각

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6가지임.

- 제1항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제1항제2호 「정당법」제22조[3]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1항제3호 「국가공무원법」제33조[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3)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당하는 사람

- 제1항제4호 「공직선거법」 제2조[5]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1항제5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1항제6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6]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러한 결격사유의 적용을 받는 공사 임원의 범위는 법 제9조제1항[7]에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감사 1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법 제11조제1항제2호(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와 「방통위법」제10조제1항제1호

---

5)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당원)이 유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3호(「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방통위법」제10조제1항제3호와 동일함.

- 법 제11조제1항제4호(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는 「방통위법」제10조제1항제5호와 동일하고, 법 제11조제1항제6호(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는 「방통위법」제10조제1항제6호와 동일함.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방통위법」제10조제1항 각 호)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	-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제1항 각 호)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방통위법」 제10조제1항 각 호)
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정안은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①‘「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8]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②‘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④‘제7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자문 등도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하여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사람,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 공무원 등은 대통령과 동일한 정치적 지향점 혹은 정책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는 공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입법사례(인권위, 권익위)[9]에도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 검토 입장임.

- 안 제11조제1항제7호 ③'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11조제1항제5호[10]와 유사하여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본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사 집행부의 별도 입장은 없으며, 입법자의 개정안 법안에 대한 취지를 존중하

9) 타 위원회 사례(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여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사의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중립 입장임.

○ 종합해보면, 공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사 임원의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인권위, 권익위 등 타 입법사례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 검토 의견을 종

구분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국민권익위원회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금융위원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인권위원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감사원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방송통신위원회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방통위원 및 방심위원의 결격사유에 유사한 사유를 추가하려는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2200249,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동일한 사유를 추가하려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04,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05, 민형배의원 대표발의」가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226